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7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9. 10.

발 의 자 : 서종수위원 외 6인

1. 제안이유

위원장 선임 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8조제2항 조문 개정.

3. 관련법규

『지방자치법』 제56조 및 제62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1

5. 예산조치 : 별도 추가되는 예산 없음

6. 기타사항 :

가. 입법예고 : 필요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관계법령 : 별첨2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2012-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위원중” 을 “출석위원중 최다선위원이,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1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(생략)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중</u>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출석위원중</u> 최다 <u>선위원이</u> , <u>최다선위원이 2명 이</u> <u>상인</u> 경우에는 그 중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【별첨2】

【관련법규】 - 【지방자치법】

- └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- └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